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7. 2.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3.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 9. 23.) 상정·제안설

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24.)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박홍근의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과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해야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제정안은 조직적인 증거조작·은폐가 용이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특수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부칙 제3조제1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